特 輯 II

UR타결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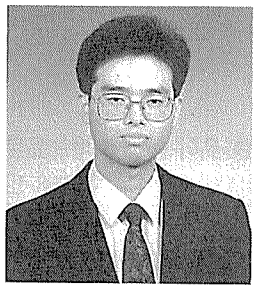

중소기업진흥공단
조 사 연 구 실
조사역 곽 성 호

1. 머리말

지난 1986년 이래 7년이나 끌어온 UR협상은 거의 모든 무역관련 규범들을 다룸으로써 이제까지의 다국간 경제협상 보다도 포괄적이며 복잡하다. 이번 UR협상이 탄생하게 된 원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세계경제의 번영에 기여한 다국간 체제가 보조금과 산업분야의 시장접근처럼 기존의 GATT가 대응할 수 없던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약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UR협상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자유무역실현"이란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관세인하 등 상품의 시장접근을 도와주는 방안과 새로운 협상분야로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그 동안 GATT체제와는 별도로 운영되어 기존의 GATT가 다루지 못하였던 섬유 및 농산물교역이 다자간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분야로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세계무역 자유화역할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확대가 예상되어 향후 안정적인 세계경제질서가 확립될

예정이다.

이러한 UR의 타결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제품은 엔고현상으로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인건비 상승과 원·부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중저가품시장에서 경쟁국 및 후발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일정 이상의 기술수준에 달하고 있다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품질, 디자인, 마케팅 등 비가격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수출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91년의 경우 임금상승 등 경쟁력 약화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감소하는 등 다소 부진하였으나 92년엔 8.4%의 증가율을 보였고 93년 9월은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시장인 미국, 일본, EC 등에서는 점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공업제품과 전기·전자업종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후발개도국의 저가격 공세로 생활용품 업종은 크게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섬유류는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형 품목들은 최근 수입자유화에 따라 중국, 대만 등 후발개도국들 제품에 내수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등 내수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외국제품의 수입에 내수시장 지키기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UR협상결과 국내수출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의 잠식 및 수출시장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수출증대로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첫째, 관세인하, 반덤핑조치에 대한 발동요건의 강화 등 무역장벽제거로 기술집약도가 낮은 중저가품은 가격경쟁력에 일시적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기술보호주의 강화로 선진국의 기술도입이 어렵게 되고 인건비 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후발개도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중저가제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그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수출관련 세제지원이 폐지 또는 축소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정부의 보호와 육성아래 성장해온 중소기업에는 자체노력이 없이는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생산시설, 자금, 인력, 시장개척, 기술 등 모든면에서 대기업보다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아래 그 동안 중소기업 경쟁력에 도움을 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제도, 무역금융 등의 보조금 성격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무역장벽인 관세인하 및 무세화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EC 등의 선진국시장에서 중국, ASEAN 등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수출시장 잠식속도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주요 UR협상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산품 시장접근과 중소기업

시장접근 협상은 한나라의 상품이 다른나라의 시장에서 쉽게 팔릴 수 있도록 관세를 낮추고 수입제한, 통관상의 제약 등 이른바 비관세장벽을 줄이고자 하는 협상이다.

〈UR시장접근분야 협상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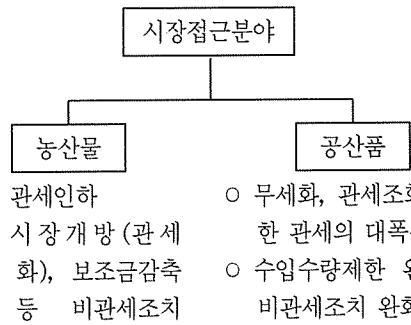

대외의존도가 53.7%('92년 기준)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86년 이후 자발적인 관세인하 추진으로 무세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추가 인하 및 수입에 부담이 없고 주요국의 관세율 수준이 33%이상 인하될 것으로 보여 가격경쟁력 등 수출증대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 화학, 전자 등의 무세화 및 관세조화에 따라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관세인하 등이 중소기업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로 연결될 수는 있으나 후발개도국의 저가격 추격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품질, 성능, 마케팅, A/S 등 비가격 경쟁력에서 후발개도국에 대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다면 관세인하 등이 중소기업제품 수출증대에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불확실하다.

〈우리나라의 관세율 인하추이〉

구 분	관세율인하 예시계획				UR관세율 협상	
	'91	'92	'93	'94	인하기준('86)	인하목표('99)
관세율 (%)	11.5	10.1	8.9	7.9	17.9	8.2

* 무세화 · 관세조화포함

(2) 보조금 · 상계관세 조치와 중소기업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산업지원제도는 수출, 중소기업, 산업일반, 농림축산업 등의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다. UR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종 보조금 등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의 불투명한 보조금의 축소 및 중단은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막에서 성장한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UR최종안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기업에의 혜택, 특정성등 세가지 요건을 갖춘 정부의 지원을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지보조금은 수출촉진을 위한 보조금, 수입억제 또는 국산품사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으로 협상발표후 3년내에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우리의 수출지원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92년 현재 무역금융의 경우 중소수출업체를 중심으로 2조 5천억원, 수출산업설비금융 3조억원가량 지원되고 있어 이들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소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상계가능보조금은 정부가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에 주거나 선별적인 판단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비율이 제품가격의 5%이상이거나 특정산업 및 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이 제공되거나 기업의 부채를 직접 감면해줄 경우 교역상대국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보조금을 말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특정성이 없으며 지원가능하지만 특정성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소재부품 운전자금 등도 상계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허용보조금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특정지원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보조금으로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관련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연구개발의 경우 기업이 자체 또는 연구용역을 통한 산업연구와 사전경쟁 개발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산업연구 75%수준, 기초개발활동 25%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산업연구는 신제품, 공정, 서비스 개발 또는 이의 개선에 사용될 목적으로 추진되는 연구를, 기초개발활동은 산업연구결과를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개선을 위한 계획, 디자인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개념화 및 설계 또는 시험제작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연구활동용 설비, 토지, 건물, 연구를 위한 상담 및 서비스료 등 연구활동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지역개발은 낙후지역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낙후지역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곤란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1인당 GDP 85% 또는 전국 평균실업율 110%를 상회하는 지역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련보조금은 법이나 규정상 요구되는 환경조건에 기존설비를 적응시킬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요자금의 20%이내로 국한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해당기업의 오염 및 공해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UR협상에서 보조금 · 상계관세 분야의 협정문이 명료화 되었으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보조금 운용의 대폭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즉, 기술개발, 인력, 지역개발 등 이번 UR협상에서 인정

하는 형태로의 개편이 이루어 지며 지원방식도 직접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으로 앞으로 정부의 보호아래 성장한 비효율적인 기업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업스스로의 체질개선에 실패한 기업은 심지어 도태되어 질 것이 분명하다.

(3) 유통시장개방과 중소기업

'92년 7월 3단계 유통시장 개방 등 정부가 이미 개방계획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UR협상에 따른 유통시장 개방부문은 별다른 부담은 없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이 유통업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제조업 특히, 중소제조업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공산품의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수입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유통업체의 진출과 연계된 외국상품의 수입확대가 예상되어 그 동안 중소제조업 위주의 유통구조로 인해 제조업체가 가졌던 시장지배력은 크게 약화되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질 것이다. 일본은 종합소매점과 가전 등의 전문점에 미국은 식품도매업과 프랜차이즈업, 완구 등,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는 화장품, 패션의류 등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지적재산권과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분야는 그간 지적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조약에서 보호되던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반도체 및 배치설계권 및 영업비밀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미국, EC 등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이미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리의 장기적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만큼 이를 이행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비교우위가 월등한 점을 이용하여 나타날 기술료(Royalty) 지급증가 및 기술개발 지연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도입 비용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과 기술개발자금 및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의 92년 기술도입건수는 185건으로 91년 240건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 기술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표의 지명도를 이용한 시장진입이나 OEM생산의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상표사용권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도입 편중도가 높고 기술력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적재산권 협상 타결에 따른 기술사용 및 해외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중소기업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기술도입 건수가 많은 기계분야와 전기·전자분야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후발개도국들이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모방하여 타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이 마련됨으로써 이에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단기적인 타격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자극하게 되고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촉진시키는 등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반덤핑과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현재 선진국에 의해 총 5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데 이중 39건이 반덤핑과 관련있음을 볼 때, 반덤핑 조치가 선진국의 가장 주된 수입규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덤핑협상에서 덤핑마진 및 피해판정 기준이 보다 명료화되고 강화되어 반덤핑관세의 부과기준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그 동안 선진수입국들이 반덤핑 조치를 남용하여 수입규제를 해온 것을 방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철강, 전자, 신발류, 앨범 등의 분야에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반덤핑제도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조치를 받게 되면 수출이 중단되는 등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효율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스스로는 국내수출기업간의 과당경쟁을 피하고 덤핑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반면에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국내 단순조립과 제3국 조립을 통한 우회덤핑 행위는 이번 UR협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차후 협상안으로

남겨두었다. 현재 우회덤핑행위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건수로 볼때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해외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6) 섬유협정과 중소기업

UR섬유협정에 따라 그 동안 GATT체제 밖의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해 섬유수출량과 그 증가율에 대해 규제되고 있던 섬유품목이 단계별로 향후 10년간 GATT에 복귀시킴으로서 1974년 이래 존속해 오던 다자간섬유협정은 완전철폐된다.

〈UR협상 단계별 섬유무역자유화 내용〉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완전자유화
기 간	'95. 1 – '97. 12	'98. 1 – 2001. 12	2002. 1 – 2004. 12	2005. 1 –
자유화품목	16%	17%	18%	49%
규제품목쿼타 연증가율	16%	25%	27%	–

섬유류 수출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EC 등에 대한 선진국시장의 수출증가율이 91년–2.5%, 92년–7.4%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수출품목은 주로 의류를 포함한 섬유제품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섬유제품류는 우리의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후발개도국들에게 그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남아지역에의 수출증가율은 91년 34.6%, 92년 23.5%로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수출품목은 직물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직물류 수출이 대종을 이루는 것은 후발개도국들의 섬유제품류의 급격한 수출증가에 직물에 대한 수요 급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번 UR협상에 따라 그 동안 쿼타와 관세로 수출부진을 보였던 선진국시장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나 우리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기술수준 또한 선진국의 약 70%수준에 불과하여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기술에 의하여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작업환경이 열악한데다가 기능인력 및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품질의 고급화, 제품의 다양화에 있어 어려운 상황임으로 후발개도국들과의 가격과 품질에서 치열한 경쟁이 초래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나라들과의 주로 경쟁이 되는 분야는 의류분야로 저가이면서 우리와 품질수준이 버금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시장 진출에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

한편 섬유류 수출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이 미진하고 저가에 의존하는 업체는 후발개도국 제품에 밀려나게되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섬유산업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상황하에서 현재 진행중인 신소재 산업용 섬유 등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고부가가치의 신제품개발과 자동화추진, 유통구조 개선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미래 첨단산업으로서의 재도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7) 정부조달시장개방과 중소기업

공익적 특수성을 이유로 GATT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의 원칙에서 제외되어 옴으로써 차별적 구매관행이 지속되어온 정부조달분야가 GATT체제로 편입되어 가입국 상호간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입국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건설부문 조달시장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부문의 비중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과의 경쟁입찰에 의해 구매여부가 결정됨으로 정부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제품과 중전기기 산업분야 등 일부 취약산업에서의 시장잠식이 예상된다.

중전기기산업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 달리 입찰에

의하여 주문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중전기업체 생산물량의 85%이상이 조달청, 한국전력 등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관납위주로 내수지향적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이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미만이며, 수출비율보다 수입의존율이 상당히 높아 커다란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전기기산업은 기술도입에 의한 제품개발로 선진기술의존도가 매우 높고 끝마무리 및 열처리 기술의 부족 등 품질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

〈중전기기 수급실적〉

구 분		89	90	91	92	증 가 율
공 급	생 산(A)	1,637	2,279	2,457	2,536	3.2
	수 입(B)	1,077	1,170	1,653	1,729	4.6
계(A+B=C+D)		2,714	3,449	4,110	4,265	3.8
수 요	내 수(C)	2,390	3,004	3,569	3,727	4.4
	수 출(D)	324	445	541	538	−0.7
수출비용(D/A)		19.8	19.5	22.0	21.2	
수입의존율(B/C)		45.1	38.9	46.3	46.4	−
내수비율(C/(C+D))		88.1	87.1	86.8	87.4	

따라서 기술보호주의의 추세와 함께 지적재산권협상으로 인해 기술도입이 어렵게 되고 정부조달협정으로 정부와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시장이 개방되어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국내시장이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선진외국업체들에게 상당규모 잠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 고유업종지정 등으로 경쟁제한에 의한 내수시장에 의존해 왔고 기술도입과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 조립에 치중해 옴에 따라 자체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내수산업 구조를 수출산업 구조로 점차 전환하고 조달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확보가 추진되어야 하고 기업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와 고품질 제품개발에 주력하여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고려할 때, 세계무역자유화는 우리 기업의 나아갈 방향임으로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은 그 성격상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수반함으로써 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을 받음으로써 내수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따라 내수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중소제품의 판로 확보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은 이제는 스스로가 자체기술, 디자인 개발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보호주의 강화로 기술도입이 어렵게 되고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점차 밀리고 있어 주요 수출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자금 및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허용범위내에서 기술개발자금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투자는 노동

비용의 증가로서가 아니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중소기업자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UR협상 타결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EC,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각종 상품의 환경관련 문제를 수입억제 수단으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환경제품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심각한 산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인력부족이 가용인력의 절대공급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3D 업종 등 취업기피현상으로 서비스업으로의 유출이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반영할 때, 중소기업으로서는 임금·복지 등 근로자 처우개선 및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근로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동시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수출·입화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증가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수출·입화물 유통과장상의 애로로서 보세장치장 입고 및 통관, 내륙운송수단 수배 등으로 나타나 사회간접자본 부족 그 자체보다는 운용 측면이 더욱 문제시 되고 있어 물류관리 개선이 절실하다.

넷째, 우리 수출상품의 해외에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취약하다. 자기상표부착 수출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자기상표부착 수출은 판매망 확보 및 홍보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기존 OEM수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기상표 개발 노력과 대기업간의 공동개발에 노력하여야만 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이 안정적이게 된다. 그리고 해외시장 정보를 무역관련기관보다는 현지고객에 대한 의존정도가 아직 높아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거래 알선, 현지시장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는 종합수출 정보 제공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통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물적유통비용을 줄이고 제조업자 위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기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발적으로 유통시장 개발에 대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즉 신경영기법개발, 유통정보화 추진, 대고객서비스 개선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UR이 발효된 후라도 3년 내지 10년에 걸쳐 유예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고유업종, 단체수의계약, 각종 보조금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자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의지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아래에서 성장해옴으로써 자생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정부가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을 하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등 기술혁신과 경영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비록 UR협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부정적이라고는 하나 정부와 중소기업 스스로가 노력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2천년대 우리경제 품질로서 승부걸자